

Grünbuch

유럽사법보좌관연맹
Europäische Union der Rechtspfleger
Union Européenne des Greffiers
European Union of Rechtspfleger
“그린페이퍼”-위원회



유럽 사법보좌관제도를 위한
정책제안서

Grünbuch

목 차

I. 서론	1
II. 유럽사법보좌관의 업무, 교육, 지위에 관한 현황	6
A) 비송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리고 사법행정	7
1. 1995년 표준규약상의 사법보좌관의 업무	9
a) 비송사건	9
b) 형사사건	10
c) 민사사건	10
d) 사법행정	11
2. 비송, 민사, 형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 그 외(위 1.외)의 관할	12
3. 비송, 민사, 형사, 사법행정에 관한 사법권의 권한 이양에 관한 논의	12
B) 임용과 교육	12
C) 사법보좌관(또는 Greffier 내지 유사 직위)의 지위	12
III. 1995년 E.U.R.의 표준규약 - 유럽 내에서 상이한 기능을 조화하려는 하나의 시도	14
IV. 유럽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19
A) 사법행정분야	19
B) 재판업무	19
C) 유럽의 법원과 공공기관	24
V. 유럽사법보좌관의 교육제도	25
A) 사법보좌관 및 유사 직위의 교육내용(현황)	25
B) 유럽사법보좌관제도를 위한 통일적 교육(제안내용)	26
VI. 유럽사법보좌관에의 업무위임의 효과	31
A) 유럽의 사법영역의 확대	31
B) 새로운 법정책적인 시사점으로서의 리스본조약	33
C) 법원에의 접근성의 제고 - Access to justice	35
D)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의 제고 - public confidence	37
E) 사법의 평가 - 사법의 기능 장애의 해결	39
F) 사법부의 효율성 - 시너지효과	40
VII. 결론	42

Grünbuch

I. 서론

유럽국가간의 사법적 협력을 촉진하고, EU내에서의 법원의 효율 및 국민의 법원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유럽사법보좌관연맹(약칭 E.U.R., European Union of Rechtspfleger)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법·자유·안전 총국에 『유럽사법보좌관제도를 위한 정책제안서 (Greenpaper for a European Rechtspfleger)』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同총국의 민사분과의 양해를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법의 창설, 발전, 조화를 지향한다’는 연맹의 규약에 명시된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를 통하여 EU 내에서의 통일적인 자유·안전·권리의 영역을 창설하려는 EU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사법보좌관제도를 위한 정책제안서의 작성주체인 E.U.R은 1967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EU의 구성국가 중 16개국 즉,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스페인을 정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서 연맹은 유럽 외의 나라의 유사한 공무원단체를 준회원국으로 두고 있는데 일본, 말리, 모로코, 튀니지 등 4개국이 현재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¹⁾ 가입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재판 그리고(또는)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준고위직 공무원(gehobener Dienst)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 정책제안서는 유럽국가에 공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이라는 제도의 창설에 관한 공개적이고 학술적인 논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사법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 역자 주 : 2010. 9. 8.-12. 이탈리아 Cuneo에서 개최된 E.U.R. 총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보좌관실무연구회가 ‘대한민국 사법보좌관협회’라는 명칭으로 준회원국으로 가입 신청, 승인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http://www.rechtspfleger.org/article-52-associated-members.html> 참조.

Grünbuch

유럽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은 법관의 업무경감에 기여해야 한다. 법관의 업무를 물적 독립성²⁾을 보장하면서 사법보좌관에게 위양함에 있어서는 각국의 특유한 입법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에서는 이미 법관의 업무과중 경감책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이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이미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사법의 효율성(Effizienz der Justiz)을 제고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외 다른 EU의 회원국은 각국에 특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사법보좌관³⁾이라 함은 원래는 법관의 업무였던 업무를 위임받아서 독립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사법보좌관은 상위직(준고위직 gehobener Dienst) 법원공무원에 해당한다. 사법보좌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의 법학분야의 고등교육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한다. 사법보좌관의 교육에 관해서는 EU회원국 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유럽 전체에 공통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정립을 위해서는 각국의

2) 역자 주 : 물적인 독립성(sachlich unabh ngig)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상급자나 선임자 등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다(weisungsfrei)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물적인 독립과 인적인 독립으로 설명되는데 물적인 독립은 ‘선임자(Vorgesetzte)가 없음’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음(Weisungsfreiheit)’을 요체로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3) 역자 주 : 독일의 경우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은 이러한 개념정의에 맞게 준고위직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독일은 일반직 공무원을 4대별하여 고위(hoher), 준고위직(gehobener), 중위직(mittler), 단순직(einfacher) 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두 번째인 준고위직 공무원에 사법보좌관의 직급을 위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보좌관은 지위의 측면에서는 독일의 신분보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E.U.R.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독일/오스트리아에서 말하는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의 개념의 중요 요소에 해당하는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기능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1~9급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법원서기관들의 단체를 독일에서 말하는 Rechtspfleger와 동등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일본의 경우 지금도 법원공무원이 우리의 사법보좌관처럼 독립된 판단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위 Rechtspfleger라는 개념을 번역함에 있어 재판작용을 補助(assistant)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사법‘보조’관 내지 사법‘보좌’관으로 번역한 사정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며,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작용에 ‘보조’, ‘보좌’라는 개념요소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지적은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사법효율화에 관한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사법보좌관은 재판작용을 assist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Rechtspfleger does not assist the judge: he/she is competent for his/her own judicial decisions and independent in his/her decisions’ 이에 관해서 자세히는 『European Judicial Systems』 (Edition 2010), 127면 참조.

Grünbuch

이러한 차이들을 조화롭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의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도 마찬가지로 상이하고 그 업무영역도 반드시 법원의 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업무를 어떠한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러한 업무영역의 문제도 통일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적 조정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의 통일된 법영역(역자 주 : EU를 의미함)에서 사법적 기능은 법원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의 새로운 공직의 모델로서의 유럽 사법보좌관제도는 확장된 사법구조와 각국의 상이한 법률시스템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재판업무 및 법원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법관련업무는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기 책임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보좌관의 관할로 이양되어야 한다. 사법보좌관은 물적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이며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정의에 의하여 결정을 해야 할 구속을 받는다. 또한 유럽사법보좌관은 통일된 교육수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페이퍼는 EU회원국의 사법보좌관 내지 이에 준하는 사법부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서두에서는 이에 관한 詳論은 생략하기로 한다. 각국의 현황은 각국이 설문에 대해 행한 응답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유럽사법보좌관에게 이양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제안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그린페이퍼의 내용은 1995년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개최된 E.U.R.총회에서 가

Grünbuch

결된 「유럽사법보좌관 표준규약(Model Statute for a European Rechtspfleger)」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의 경감과 관리를 위한 EU위원회 각료위원회의 회원국에 대한 권고 R 86(12)호」에 기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 표준규약은 공개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시민의 권리에 관한 「유럽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6조의 요청에 부합한다.

「표준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법원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a) 법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b) 국민이 적절한 기간 내에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협약6조)
 - c) 법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IT기술사용을 확대할 것
2. 유럽국가들은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EU위원회 각료위원회의 회원국에 대한 권고 R 86(12)호」를 준수하여왔다. 사법보좌관제도는 각국에 상기의 각호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치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3. 정보처리분야 및 법률분야의 교육, 연구 및 공무원연수에 관한 「유럽평의회 권고 R 80(3)」에 부응하도록 위 분야에 관한 기본 및 전문교육의 기회가 법원공무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4. 사법보좌관의 교육 및 양성기관에 관한 통일적 규정은 사법보좌관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절실히 요청된다(유럽공동체 지침 89/48).

유럽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그린페이퍼(정책제안서)⁴⁾의 작성과 관련하여 E.U.R.은 이를 위한 위원회(Commission)를 조직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은

4) 역자 주 : Green paper(독 : Gruenbuch)는 EU의회가 특정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제기와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적인 보고서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은 White paper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경우 E.U.R.의 Green paper를 'EUR白書'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과는 달리, Greenpaper의 직역의 의미를 살려두면서 그 보고서의 취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정책제안서'로 의역하기로 한다.

Grünbuch

E.U.R.의 구성국 회원들로 이루어졌는데, 벨기에(Joseph Horrion), 덴마크(Else Dankau), 독일(Stephan Emmmler), 프랑스(Jean-Jacques Kuster⁵⁾), 오스트리아(Gerhard Scheucher), 루마니아(Dumitru Fornea) 그리고 E.U.R.의 회장단(회장 Thomas Kappl, 사무총장 Adelheid Hell, 재무이사 Harald Wilsch)이 그 위원회의 멤버들이다.

5) 역자 주 : Jean-Jacques Kuster는 EU위원회의 E.U.R.대표이기도 하다.

Grünbuch

II. 유럽사법보좌관의 업무, 교육, 지위에 관한 현황

1995년에 가결된 「유럽사법보좌관 표준규약(Model Statute for a European Rechtspfleger)」은 1995년 현재까지 E.U.R. 각 회원국의 사법보좌관 또는 법원공무원(Greffier)들이 담당해온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에 관한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법보좌관들이 행하는 업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업무들이 위 표준규약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규약은 E.U.R.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과 장래의 활동범위를 시사하고 있으며 참고자료로써 기능할 것이다. 그 외에도 위 규약은 사법보좌관 양성에 필요한 교육 및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알맞은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E.U.R.의 표준규약이 가결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E.U.R. 각 회원국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다음의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각국의 현황은 E.U.R.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각국에서 사법보좌관(프랑스 법계열에서는 Greffier en Chef)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공무원들의 업무의 확장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E.U.R.의 그린페이퍼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현황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하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응답을 행한 회원국은 다음의 13개국이다 :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

Grünbuch

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현황은 다음의 3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 비송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사법행정분야의 업무
- 임용 및 연수시스템
- 사법보좌관(또는 유사한 직위)의 지위

A) 비송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리고 사법행정

1995년 「유럽사법보좌관 표준규약(Model Statute for a European Rechtspfleger)」에는 1995년 현재 E.U.R. 각 회원국에서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보좌관이 행하는 비송, 민사, 형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아래의 현황표는 각 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또한 질문에 응한 회원국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 및 이를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E.U.R.회원국의 사법보좌관(또는 유사 직위)의 담당업무(관할) 현황표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민사사건													
지급명령	-	+	+	+	-	-	-	-	-	+	-	+/-	-
부동산 강제경매	-	+	+	-	-	-	-	-	+	+	-	+	-
도산절차	-	-	+	+	-	-	-	-	+	+	-	+/-	-
소송비용 확정	-	-	+	-	+	-	-	-	+	+	+	+	-

Grünbuch

배당절차	-	-	+	-	-	-	-	-	-	+	-	+	-
강제집행	-	+	+	+	+	-	-	-	-	+	+	+/-	-
증인신문	-	-		-	-	-	-	-	-	+	-	-	-
소송구조	-	-	+	-	+	-	-	-	-	+	-	-	-
감정업무	-	-	-	-	-	-	-	-	-	+	+	-	-
원상회복	-	-	-	-	-	-	-	-	-	+	-	+	-
비송사건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후견사건	-	+	+	-	+	+	-	+	+	+	-	+/-	-
유산사건	-	+	+	+	+	+	-	-	+	+	+	+	-
부동산등기	-	+	+	+	-	-	-	-	-	+	+	-	-
상업등기	+	-	+	+	+	-	-	-	-	+	+	+	-
공증		+	+	-	-	-	-	-	-		-	-	-
재산봉인	-	-	+	-	-	+	+	-	-		-	-	-
선거권부여	-	-	-	-	+	-	-	-	-		-	-	-
국적인정	-	-	-	-	+	-	-	-	-		-	-	-
형사사건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형벌집행	-	-	+	-	-	-	-	-	-	-	-	+/-	-
벌금지급유예 및 분납	-	-	+	-	-	+	-	-	-	-	-	-	-
공소대리	-	-	+	-	-	-	-	-	-	-	-	+	-

Grünbuch

행정업무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사무국장	+	+	+	-	+	+	+	-	+	+	-	+	-
담당관		+	+	-	+	+	+	-	+	+	-	-	-
법원회계관	+	+	+	-	+	+	+	-	+	+	-	-	-
선임사무관	+	+	+	-	+	+	+	-	-	+	-	+	-
징계위원	+	+	+	-	+	+	+	-	-	+	-	+	-
임용절차참여	+	+	+	-	-	-	+	-	+	+	-	-	-
예산업무	+	+	+	-	+	+	+	-	+	+	-	-	-
예산의 집행감사	+	+	+	-	+	+	+	-	+	+	-	-	-
청사관리	-	+	+	-	+	+	-	-	+	+	-	-	-
그 외 민사, 비송, 형사사건	-	+	+	+	-		-	+	+	-	+	-	-
그 외 행정업무	-	-	+	-	-		-	-	-	-	-	-	+
법관업무 위임계획	-	-	-	-	+		-	+	-	-	-		+
사법행정업무 위임계획	-	-	-	-	-		-	+	-	-	-		+

※ 역자 주: E.U.R.가입국에 대한 설문을 기초로 작성된 이 현황표상 '+'는 사법보좌관(및 사법부공무원)의 업무라는, '-'는 사법보좌관(및 사법부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는 일부가 사법보좌관(및 사법부공무원)의 업무라는 의미이고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각 회원국이 위 설문에 각 항목에 대한 판단 및 포섭이 어려워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1. 1995년 표준규약상의 사법보좌관의 업무

a)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가족법사건, 상속사건,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사단 및 법인등

Grünbuch

기, 봉인을 통한 재산의 보전, 의결권의 대리권부여절차, 국적인정의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루마니아를 제외한 나라에서는 비송영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는 위에 열거한 거의 전분야(등기/등록부분이 특히 그러하다)를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 에스토니아도 비송사건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사법보좌관의 업무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경우 등기/등록의 소관을 사법행정의 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그 외 다른 행정부처 또는 행정조직의 소관으로 보고 있다(재무성 및 상무부).

b) 형사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체포명령 또는 사전동행명령의 발령에 수반되는 집행, 지명수배의 발령 및 집행, 벌금형의 지급유예 및 분할지급의 허가, 대체자유형의 집행명령,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자유형의 대체집행,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의)공소대리 등이다.

소수의 국가들만이 형사사건에서 법관 외의 공무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 독일(상기 적시한 사건 전체), 이탈리아(일부에 대해서만), 스페인(일부에 대해서만).

스페인의 경우 2003년에 형사사건분야에서 일부 업무를 사법부공무원에게 위양하는 법률규정이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c) 민사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지급명령, 강제경매, 강제관리, 도산절차, 비용확정절차, 배당절차, 채권집행, 양육비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의 작

Grünbuch

성과 변경, 강제집행보전,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재산명시절차, 증인신문, 소영구조, 사법공조요청, 감정절차의 감독, 원상회복절차 등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민사사건을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고 스페인은 최근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위 민사사건에 관한 법관의 업무 중 일부를 법원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다음의 다섯 국가는 이를 사법보좌관/법원고위공무원에게 이양하였다(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스페인의 경우 2003년에 민사사건분야에서 일부 업무를 사법부공무원에게 위양하는 법률규정이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는 않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d) 사법행정

사법행정에 관한 업무분야는 사무국장, 사무과장, 담당관, 과장, 인사담당관, 재무관, 선임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운영관, 징계위원회에의 참가, 채용 및 임용절차에서의 참가, 예산안의 작성, 예산감독 및 청사관리 등이다.

상기의 관리업무 및 인사,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는, 회원국이 공통되는데, 사법보좌관 내지 유사 직위가 수행하는 업무이다(에스토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제외).

법원의 관리와 운영, 인사 및 재무관리에 관한 것은 사법보좌관들에게 위임되어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원장의 감독 또는 다른 기관장의 감독

Grünbuch

하에 행사된다.

2. 비송, 민사, 형사 및 사법행정 에 관한 그 외(위 1.외)의 관할

1995년 규약에서 언급한 업무 외의 업무들도 많은 나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법률구조(독일,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상속, 도산절차, 혼인증명서(이상 노르웨이), 친자관계확인 에 관한 사건(덴마크), 강제집행, 강제집행절차의 보전절차, 선서에 갈음한 담보의 제공(이상 독일), 지급명령절차(폴란드) 등이 그 예이다.

3. 비송, 민사, 형사, 사법행정 에 관한 사법권의 권한 이양에 관한 논의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 판사의 업무를 Greffier en Chef) 또는 Greffier에게 이양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무성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 6. 30.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과 유사한 재판기능을 가진 법원공무원(Greffier)을 창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스페인 은 비송사건분야(가사, 후견, 상속, 부동산등기분야)에 있어서의 법원공무원의 관할확대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에서는 법무성이 법관의 사법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법원행정공무원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B) 임용과 교육

이에 관해서는 그린페이퍼 V.에서 상설하기로 한다.

C) 사법보좌관(또는 Greffier 내지 유사 직위)의 지위

6) 역자 주 : Greffier는 프랑스법계(벨기에, 네덜란드)에서 법원 서기(영 : Clerk, 독 : Urkundebeamte)를 일컫는 말인데 en Chef는 그 중에서 상급자에게 붙이는 것으로 Greffier en Chef는 법원서기관 내지 법원사무국(과)장 등의 고위직을 의미하고, Greffier는 Greffier en Chef보다는 하위인 법원사무관 이하의 법원공무원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http://fr.wikipedia.org/wiki/Greffier> 참조.

Grünbuch

사법보좌관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가 연방국가이건 아니건 간에 각 국가의 정치적인 조직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의 공적기능의 관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보좌관은 그의 담당업무의 광협의 차이는 있겠으나 법원의 중견 내지 상급의 인력이다. 그의 지위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법률은 사법보좌관이 자신의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법률로 사법보좌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 스페인, 덴마크].

Grünbuch

III. 1995년 E.U.R.의 표준규약 - 유럽 내에서 상이한 기능을 조화하려는 하나의 시도

1995년 유럽의 법원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논의에서 유럽의 법원공무원이 행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었다 :

하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행하는 사법'보좌'(?)⁷관(Rechtspfleger) 기능, 다른 하나는 그 외의 나라의 법원공무원이 행하고 있는 법관의 補助者(als Assistenten der Richter)로서의 기능.

표준규약은 하나의 새로운 법원공무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3개의 지주(支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첫째는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비송사건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둘째는 법원의 사무국의 운영과 관리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첫째와 둘째는 양질의 양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는 사법보좌관이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든 헌법에 근거하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표준규약은 가결된 지 20년이 경과하였는데 이 규정의 효과를 오늘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각국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EU의 입법과 공적 기능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유럽에 통일적인 사법보좌관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표준규약의 효과가 있음은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중부 유럽 그리고 동부 유럽에서는 사법보좌관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7) 역자 주 : 프랑스의 Greffier가 법관의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함에 반해서 독일의 Rechtspfleger는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Rechtspfleger를 번역함에 있어서 '보조(assistant)' 내지 '보좌(secretary)'적인 개념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이 경우를 보더라도 부적절한 명명(naming)이라고 여겨진다.

Grünbuch

유럽참사회(또는 유럽각료회의 Europarat), E.U.R. 및 회원국의 공동작업과 EU의 프로그램에 힘입은 것이었다. 표준규약의 효과는 특히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분야에서 현저하였다. 이 분야는 사법부 및 사법부공무원의 효율이 경제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표준규약의 효과는 서유럽에서는 미미하고 법관의 재판기능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이러한 표준규약의 의도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스페인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아직 법률시행법의 흠결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서기(관)에게 재판업무의 일부를 이양하는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995년 법률로 법관의 업무 중 일부를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하였는데, 이 입법이 독일 사법보좌관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표준규약이 법원의 운영, 관리, 지휘, 사법행정의 분야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은 법원의 재판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원행정에 관한 한 가용한 내부 인력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법원조직내부에는 행정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력풀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기관에 특유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잘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유럽의 동반성장의 견지에서 표준규약의 효과는 강조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기능유지와 사법부의 효율성 제고는 유럽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요한 관심사였으며, 특히 사법효율성의 제고(Verbesserung der Justiz)는 사법부가 처한 악조건(과부하, 복잡성, 곤란성, 분쟁사건의 폭주, 예산 및 설비의 부족)을 고려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에 해당되었다. 법원의 일반적 공무

Grünbuch

원(die in der Geschaeftsstelle der Gericht arbeiten)은 의심할 여지없이 법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를 해 왔는데 적극적인 사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민원인과 대면하여(nahe am Buerger)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법원에의 접근성(Zugang zur Justiz)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응답을 해주고 있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증가일로에 있는 분쟁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국가 및 각 기관은 사법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 수용적인 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000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참사회(각료회의)의 연석회의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의 모델에 따라서 변론준비업무 또는 재판업무 중 일부를 법원일반직공무원에게 이양하게 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1999년 10월 (스웨덴의)탐페레회의에서 EU가 하나의 법적 공동체⁸⁾로서 작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개별국가에서 취득한 집행권원을 다른 EU회원국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인정하게 하도록 하고 EU내에서 공통적인 지급명령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사법보좌관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에서 행하는 절차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입법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사법보좌관들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으며 특히 사법보좌관 업무영역에 관한 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상속증명의 부여 등에 있어서 입법상 발전이 있었다.

사법보좌관(Rechspfleger 및 Greffier)은 유럽법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E.U.R.(유럽사법보좌관연맹)이 그린페이퍼의 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8) 역자 주 : EU가 개별 국가의 단순한 합으로서가 아니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법제의 통일, 공동의 안전 보장체제를 갖춘 법적/경제적 통일체'로서 기능한다는 의미로서 '자유, 안전, 법률의 공간(ein Raum der Freiheit, der Sicherheit und des Recht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Grünbuch

유럽사법보좌관제도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표준규약의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규약이 언명한 그대로의 강력한 변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얼마간의 성과는 가져온 것이다.

E.U.R.이 각 회원국에 보낸 설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면 지난 20년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법보좌관제도를 모델로 한 사법보좌관제도의 진보와 발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 CEPEJ,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가 최근 간행한 『유럽사법시스템에 관한 보고서-2008년판』의 8.장은 법관 외 법원공무원에 관해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신분 및 기능이 보장된 법적 소양을 갖춘 공무원의 활용은 사법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비법관인 법원공무원 중 하나의 카테고리가 독일법체계에서 유래한 사법보좌관제도이다”. E.U.R.의 표준규약은 사법보좌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일부 나라에서 독일의 사법보좌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일부 나라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CEPEJ는 43개국의 EU회원국들 중 사법보좌관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용한 나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E.U.R.의 그린페이퍼는 EU의 목적과 취지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EU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Franco Frattini는 “유럽차원의 공통된 규율의 필요성이 각국 고유의 법률시스템을 교란시켜서도 안되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되고, 일국의 경계를 벗어

Grünbuch

난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서도 안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Grünbuch

IV. 유럽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

A) 사법행정분야

사법보좌관은 다음과 같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법원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원행정에 관하여 법원장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 사무국장은 채용, 인사운영 및 업무처리설비(예를 들어, 전산장비) 등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그는 재판참여, 기록관리, 법원청사의 방호, 우편 등의 송달 등을 담당하는 과/실원들의 최선임자이다.

■ (사무)과장

사무과장은 인사, 재무, 지출, 조달, 청사방호, 전산자료관리 등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책임자이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 회계관

각 법원의 국고, 세입세출, 소송비용의 계산과 관련된 지도업무, 비용 및 회계의 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납과장

■ 사무국의 선임담당관

B) 재판업무

법원은 개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중재하고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특히 소규모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즉 법적 생활의 최일선에서 법률에 의하여 그의 관할에 속하는 업무를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ohne Bindung an Weisungen) 물적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in sachlicher Unabhaengigkeit) 소송절차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 아울러

Grünbuch

사법보좌관이 형벌집행에 관한 검사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1. 1심 법원(구법원 Amtsgericht)

a) 사단에 관한 사건

- 임시이사의 선임
- 사원의 총회소집의 수권
- 등기에 관련된 결정 및 법인등기의 실행

b) 선서에 갈음한 보증의 실행

- 재산관리 또는 사무처리에 관한 보고의 수령
- 상속재산에 있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현황보고의 수령
- 담보물의 조사, 관리 및 매각시 현황보고의 수령

c) 사용임대차(Pacht)에 있어서의 담보설정

d)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사건

- 등기에 관한 결정과 실행

e) 의사표시 수령 및 공증사무

f) 실종사건

g) 부동산(토지)등기사건

다음의 부동산신청에 관한 결정

- 매매, 증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 주택임차권, 지역권 등의 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영업상 신용대출 및 건축시공대출로 인한 토지채무의 등기
-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상속으로 인한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등기
- 토지채무의 양도, 저당권말소 및 소비대차금의 변제로 인한 토지채무의 말소, 순위의 변동등기

h) 선박등기 및 건조 중 선박에 관한 등기

i) 항공기의 담보권에 관한 등록

Grünbuch

- j)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절차
- k)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절차
- l) 채권배당절차
- m) 그 외의 법원의 배당절차
- n) 미성년사건, 가족관계사건, 후견사건, 신분법상 지위에 관한 사건
 - 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결정
 - 재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권의 박탈
 - 친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 친권의 행사와 법정대리에 관한 결정
 - 이익상반행위의 경우 친권의 박탈
 - 보충후견인의 지명
 - 미성년 고아에 대한 후견인의 지명
 - 후견인의 선임, 지명, 임명, 감독
 - 재산상황고보고서와 결산보고서의 수령
 - 규칙에 위반한 후견인의 해임
 - 후견법원의 인가에 관한 결정
 -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성인에 대한 후견선임 등의 절차
 - 부권의 승인
 - 양육비의 승인
 - 혼인의 절차
 - 협의이혼에 관한 결정
 - 공동친권의 변경에 관한 증명
 - 재산법상의 조정안 작성
 - 혼인공고의 면제
 - 배우자의 대리권에 대한 허가
 - 의사표시에 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대체한 처분
 - 성 및 이름의 변경
 - 입양의 승인

Grünbuch

o) 상속사건

- 유언서에 관한 증명
- 유언서 및 유언계약의 검인
- 법정상속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관한 결정 및 상속증명서의 발부
- 상속재산이 채무초과할 경우 상속재산을 보전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
- 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의 선임, 임명 및 감독
- 상속재산 및 유언집행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승인
- 그 외 다른 절차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또는 분쟁에서의 조정

p) 상사 및 등록사건에 관한 사항

- 개인회사
- 상사조합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상업장부의 조사
- 상업허가의 승인

q) 시민권 및 시민권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권의 부여의 인정
- 미성년자의 성명 변경의 증명
- 대리투표권의 승인

r) 파산절차의 실시

s) 민사소송절차

- 국내지급명령사건
- 유럽지급명령사건

Grünbuch

- 유럽에 공통된 강제집행절차
 - 공시최고
 - 법률구조에 관한 절차
 - 절차상담
 - 비적출자의 양육비확정에 관한 절차
 - 집행문 부여(유증, 기업인수시의 승계집행문, 조건이 있는 경우의 집행문 부여)
 - 채권의 압류
 - 공탁절차
 -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결정
 -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사항
 - 세금 및 수수료의 징수
- t) 공증인의 사무
- u) 법률이 정한 조정위원의 선임
- v) 선거절차에 있어서의 법원의 결정

2. 형사벌의 집행, 검찰청

형사소추는 검찰청의 업무에 속하고 법관은 소추된 자의 유무죄와 범죄에 적합한 형벌의 양정(Zumessung)에 관한 결정을 하고 형사판결의 집행은 사법보좌관이 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이 재판형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의 확정, 지급기간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벌금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하여야 하고 지급불능인 경우에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사법보좌관은 피고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는데,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하거나 체포명령을 발령하거나 도망자의 경우 지명수배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유형의 집행을 받을 경우 집행기

Grünbuch

간의 초과여부에 관해서는 사법보좌관의 감독을 받는다.

C) 유럽의 공공기관과 법원

유럽사법보좌관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서 유럽의 공공기관 및 법원에 임용될 수 있다.

Grünbuch

V. 유럽사법보좌관의 교육제도

유럽의 교육

A) 사법보좌관 및 유사 직위의 교육내용(현황)

국가	교육
덴마크	사법부 내부의 전문교육기관에서 3년간의 기본적 교육
독일	3년제 사법보좌관 학교에서 교육 후 수료시 사법보좌관 학위(Diplom-Rechtspfleger) 부여
에스토니아	법무성 내 교육
프랑스	대학에서 다음 소정의 법학교육을 마친 자에 대해 해당 직위에 임명한다. 1. 3년 과정 : 사무과/국장(Greffier en Chef) 2. 2년 과정 : 법원사무관(Greffier) 이후 18개월간의 사법보좌관학교(Dijon소재)의 교육 및 5년간 매년 10일간의 추가교육 이수 의무를 진다
이탈리아	매년 몇 개의 과정을 개설할 뿐이고 별도의 전문학교에서 교육은 실시하지 않음
룩셈부르크	사법행정교육기관에서 5개월간 이론교육 · 이론평가를 마치고 임시로 임명되어 법원공무원으로 임명 · 3년근무 후 행정실무평가를 마친 후 정식공무원으로 임명 · 정식공무원으로 임명 후 승진가능
네덜란드	업무관련 교육
노르웨이	대학졸업 또는 전문대학교
오스트리아	사법보좌관학교에서 교육 실시
루마니아	법원서기(Greffier)교육을 위한 국립학교에서 교육

Grünbuch

B) 유럽사법보좌관제도를 위한 통일적 교육(제안내용)

각국의 대학자격에 관한 학력기준을 통일화하고 특히 각 회원국 간의 대학생 및 학위취득자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EU의 교육부장관은 1999년 볼로냐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국의 학위를 상호 인정하고 유럽권내에서 직업을 위한 통일적인 학위기준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EU내에서는 직업수행을 위한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1단계 과정(학사과정)과 고위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과정(석사과정)으로 법률관련 교육체제가 구성될 것이다. 법학학사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양성에는 실무수습교육(Praktikum)이 필요하다(사법보좌관시보).

교육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기간
1과정	법학교육 (기초이론교육) 수료 : 법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3년
2과정	실무수습 (시보기간) 수습기관 : 법원, 검찰청	1년
3과정	사법보좌관으로 정식임용	
선택사항 4과정	석사과정(시보포함) (전문화) 수료 :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2년
	법조직업 판사, 검사, 공증인, 고위 사법부공무원	

Grünbuch

제1과정

기초이론교육은 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3년간의 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내용

-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
- 강제집행법
 - 강제집행총론
 - 파산법
 - 강제경매법
- 가족법
 - 혼인법
 - 이혼법
 - 부양관련법률
- 미성년 및 후견법
- 상속법
- 부동산(토지)등기법
- 상업등기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 형집행법
-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 헌법
- EU법

각 과목에서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며 이 때 취득한 점수는 (수료시 치르는) 국가시험의 총점에 가산된다.

Grünbuch

제2과정

국가시험을 이수한 사법보좌관후보자는 법원 및 검찰청에서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습기관의 선택 및 지정은 사법보좌관선발과정에서 정해진다. 기간은 1년이다.

실무수습내용

a) 비송사건

- 가족법 및 후견법
- 상속법
- 부동산(토지)등기법
- 상행위법 및 회사법
- 상업등기, 조합등기, 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회사등기, 선박등기, 항공기등기
- 공증법
- 봉인에 의한 재산보전
- 선거권의 대리허가
- 국적부여의 결정

b) 형사사건

- 체포장, 구인장 등의 발부에 관한 형의 집행
- 벌금의 지급유예 및 분할납부의 허가결정, 대체자유형의 집행결정 및 대체자유형을 대체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 공소대리

c) 민사사건

- 국내 지급명령사건

Grünbuch

- 유럽 지급명령사건
- 부동산강제경매 및 부동산강제관리
- 파산절차
- 배당절차
- 소송비용확정절차
- 유체동산집행
 - 채권의 압류
 - 집행정지
 - 재산명시절차
- 양육비 관련 절차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의 작성
- 증인신문
- 법률상 구조
- 소송비용구조
- 감정사무에 있어서의 결정
- 원상회복절차(소급효가 있는 일정한 경우)

d) 행정사무

- 사무국장, 과장
- 담당관, 예를 들어 인사, 재무담당관
- 용도/지출 담당관
- 수석 사무관
- 임용절차에의 참여
- 예산의 편성과 집행
- 청사관리

제3과정

Grünbuch

상급심으로의 상소가 보장되는 비송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법보좌관으로 임용하는 단계

사법보좌관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가, 비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가는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제4과정(선택)

사법연수생을 포함한 법학석사과정.

이 과정은

- a) 1과정부터 3과정까지 이수한 사법보좌관이 계속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데, 사법연수생은 위 1과정과 2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
- b) 또한 제1과정을 마친 자가 위 석사과정을 바로(제2과정을 생략하고)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내용

- 기존 법학분야의 심화교육
- 다른 법학분야의 전문화

위 교육과정의 필기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국가시험의 총점에 가산된다.

Grünbuch

VI. 유럽사법보좌관예의 업무위임의 효과

A) 유럽의 사법영역의 확대

유럽의 사법영역은 확대일로에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영역적 측면에서 회원국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민사법에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의 모색, 각국의 사법시스템의 발전적 조화와 유럽공동체법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유럽의 미래는 바로 민주적, 사회적 그리고 법치국가적 영역의 창설과 EU국가 간의 연대의 창설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EU의 법정책적인 권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EU의 권한의 정당성은 '자유, 안전, 권리에 관한 새로운 EU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EUV(EU기본조약)⁹⁾ 제3조 2항, AEUV(EU국가간 협력에 관한 조약) 제67조 1항]. EU회원국 국민들의 사법에의 접근에 대한 요구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는 각 국가 내 차원뿐 아니라 국가를 넘어선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송달규칙(2001. 5. 31. 시행), 유럽과산규칙(2005. 10. 21. 시행), 유럽의 집행권원에 관한 규칙(2005. 10. 21. 시행), 유럽지급명령규칙(2008. 12. 12. 시행), 소액사건규칙(2009. 1. 1. 시행)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더 나아가 AEUV 제86조에서는 유럽검찰청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럽차원의 사법기관을 창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건들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 법률은 더 이상 국가의 경계 내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9) 역자 주 : EUV는 유럽연합기본조약(Der Vertrag ueber die Europaeische Union)의 약자이고 이는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를 형성한다. EU의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EU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체결되었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7년 리스본조약으로 불리는 2007년 조약을 통해서이다. AEUV는 'EU국가간 협력에 관한 조약(Der Vertrag ue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aeischen Union)'으로 EUV와 함께 EU의 기본적인 정치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Grünbuch

이러한 법적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원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법원은 외부에서 제기하는 많은 요청들을 해결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송절차가 길어지고 법원이 공정을 결한 결정을 하고 급기야 나중에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내부의 예산에 국한되지 않는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는 법원의 과부하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는 (각국의) 법치국가적인 기반이 그 존립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EU의 지속적 존립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요청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U는 유럽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법적 영역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법정책적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법원조직에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인 **유럽사법보좌관**을 창설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EU의 법정책적 맥락에서 비추어볼 때 유럽사법보좌관제도가 사법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독일사법보좌관의 예에서 실증이 되듯이 사법보좌관제도는 사법제도의 기능 유지를 담보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의 특수한 업무영역의 보장, 독립성의 보장 그리고 판사 및 검사와의 협력이 결정적이다.

이런 이유로 사법보좌관이 법관과 더불어 **제3의 권력(사법권)의 두 번째 지주**¹⁰⁾임이 정당화된다. 유럽참사회의 법률분과의 위원장인 Guy DE VEL은 이미 2001년 E.U.R.이 간행한 『사법보좌관의 업무와 지위』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기

10) 역자 주 : 독일에서는 Rechtspfleger의 지위를 언급함에 있어서 ‘제3권력(사법권력)의 두 번째 축(die zweite Saeule der dritten Gewalt)’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는데 이는 독일 법무성 장관이었던 한스 포겔이 독일사법보좌관협회의 68주년 기념 축사에서 행했던 말이다. 당연히 ‘제3권력의 첫 번째 축(지주)’은 법관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008년 독일사법보좌관협회의 100주년 기념 축사에서 독일 법무성장관인 브리기테 쾨프리는 ‘그간 사법보좌관은 사법의 보조자에서 사법부의 두 번째 지주로 발전을 이루어 왔고 독일 사법부의 포기할 수 없는 초석(ein unverzichtbarer Baustein einer starken Justiz)’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Grünbuch

관이다. 사법보좌관의 재판기능 및 사법행정기능은 법원의 재판기능을 개선하고, 법적 절차의 준수의 감시 및 업무처리의 신속에 기여한다.”

「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 CEPEJ,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가 최근 간행한 『유럽사법시스템에 관한 보고서-2008년판』에서는 사법보좌관에 관해서 독자적인 장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2개의 유럽국가가 사법보좌관 또는 Greffier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의 기능과 효율성 제고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등이다. 그 외에도 유럽 외의 나라들 중 E.U.R.에 준회원국으로 가입된 나라들인 모로코, 일본, 튀니지 등도 언급되고 있다. 터키는 재판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유럽의 법적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럽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B) 새로운 법정정책적인 시사점으로서의 리스본조약

2007. 12. 13. 27개국의 EU회원국의 정부대표들에 의하여 체결된 리스본조약은 유럽통합에 있어 중요한 사법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합의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각국이 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리스본 조약은 제3조 제3항의 ‘단일한 유럽시장의 창설’에 관한 내용보다는 제3조 제2항의 ‘자유, 안전, 권리에 관한 새로운 EU의 질서 구축’을 우선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동안의 유럽사법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상찬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유럽법 질서의 구축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동유럽에서 있었던 법치국가적 질서의 구축과정

Grünbuch

보여주듯이 사법은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화**는 사법시스템이 상황에 융통성있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처함에 있어서 유럽 전체에 통일된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법보좌관이 특히 중요한 변수로서 기능을 한다. 사법보좌관의 광범위한 그리고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는 업무와 그 지위는 법원, 검찰청 그리고 사법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리스본조약은 통합과정의 구성요소로서 보다 **간편하고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보충적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EUV 제20조와 AEUV 제326조를 참조).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결과적으로 사법적 영역에서의 협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08년 8월 현재 EU회원국 중 8개 국가는 이혼사건에 있어서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적 협력**은 AEUV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EU회원국의 국민들의 정의와 정당한 법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사법시스템도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유럽사법네트워크의 구축, 유럽사법포털시스템의 확대 및 유럽법원의 판례집의 편찬 등을 들 수 있다. 2008. 6. 23. 유럽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EU위원회의 부위원장인 Jacques Barrot는 유럽사법네트워크는 하나의 새로운 법적 틀과 부가적 수단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Jacques Barro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민사와 상사사건을 위한 유럽사법네트워크는 유럽이 민사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서 회원국내 법원과 공공기관은 효율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시민에 가까운, 시민을 위

Grünbuch

한 사법공간을 창설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AEUV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럽검찰청의 창설과 같은 강행적인 기관의 설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 영역 내에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법기관을 창설하여야 한다면 이는 가용자원의 한계상황에 처한 법원으로서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유럽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은 각국의 사법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선 관할구역을 가지는 사법기관의 설치의 결과로서, 각국은 반드시 법관이나 검사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일반적으로 법관의 유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법원실무상으로는 이미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시민과 소통하는 영역의 업무들이 위 초국가적인 사법기관의 해당업무로서 적합할 것이다. 이는 개별 국가의 법치국가의 통합과 법률의 집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EU시장의 기능성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AEUV 제81조 2항에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EU시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사법의 기능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EU는 하나의 특수한 법적 영역을 창설하고 있는데 이 EU의 법적 영역에서는 기본권과 각국에 특유한 법제도와 전통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성공적인 법제도로서 유럽의 사법전통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고, 이는 리스본조약의 배경이 되는, 미래에도 잠재성 있는 중요한 법전통임을 나타내고 있다.

C) 법원예의 접근성의 제고 - Access to justice

AEUV(EU국가간 협력에 관한 조약) 제67조 제4항은 EU는 시민의 법예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시민의 법원예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EU에서의 시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

Grünbuch

보장을 위한 헤이그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2004. 11. 4~5.의 유럽평의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사법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법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AEUV 제81조 제2e항). 2008년 6월 23일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유럽의 사법네트워크의 설립에 대한 유럽평의회 결정(2001/470/EG)의 개정을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평의회 결정에 대한 제안은 법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국가간 사법협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법에의 접근, 즉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2008년 4월 발간한 유럽위원회의 유럽바로미터 보고서 Eurobarometer Bericht 292호에서 유럽인의 과반수가 국경을 초월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Eurobarometer Nr.292, 6면)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유럽인의 74%가 유럽국민들에게 사법에의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EU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법분과 사무총장인 Guy DE VEL은 2001년 E.U.R.의 『사법보좌관의 업무와 지위』에 관한 각국 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의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보좌관은 국민과 판사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법원에 대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하였다. Greffier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판사의 업무와 Greffier의 업무처럼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업무는 없다. 더 나아가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상의 독자적 및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요한, 그리고 직접적인 법의 매개자로서, 시민과 법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법보좌관제도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법보좌관이 지휘하거나 개입하는 법원절차는 변호사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Justiz direkt” - 직접적 사법접근). 이를 통해서 국민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

Grünbuch

속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리고 경제적인 접근수단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사법에의 접근은 특히 비송사건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국민이 절차의 주인이며 절차의 시작, 목적 및 종료에 대해 주도권을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 기타의 모든 영역에서도 국민과 판결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보좌관은 이러한 법정책적인 의의를 가진 제도로서 유럽기본조약(EUV) 제1조가 '유럽국민의 밀접한 연합'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EU'의 법적 목표설정 (Rechtsagenda) 즉, '법원의 결정절차에 있어서 이는 가능한 공개되어야 하고 가능한 시민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와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법원실무에서 사법보좌관이 주도하고 개입하는 절차는 최대한 국민에 접근한(가까운)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각 소송단계에서 사법보좌관은 권리를 구하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욱 국민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더 이상 정보의 비대칭성(불균형)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은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시킨다. 사법보좌관은 국민들이 자신의 금전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속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부하며,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공적 등기부를 작성하고, 비용을 확정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사법보좌관의 제도가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논리의 귀결로 여겨진다.

D)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의 제고 - public confidence

2008년 6월 발간한 유럽위원회의 유럽바로미터보고서 Eurobarometer 290 호에 따르면 유럽국민들의 76%가 회원국들이 사법 혹은 경찰의 정보의 교류

Grünbuch

에 더 많은 노력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자유, 안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Eurobarometer Nr.290, 32면). 대개 시민들은 정치적 영역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지만 사법의 영역에서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여기서 Eurobarometer 290호는 '시민들은 인권의 보장 및 **사법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자 하는데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Eurobarometer Nr.290, 32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영역은 아동의 권리 및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 CEPEJ,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가 최근 간행한 『유럽사법시스템에 관한 보고서-2008년판』도 같은 맥락인데 이 보고서는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public confidence)**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작성되었다(60면 이하).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이 올바른 법정정책 방향과 제도인가의 문제는 그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public confidence)**를 더 많이 얻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EU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신속히 찾을 수 있다면 자신의 권리가 더 보장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또 다시 법원 조직의 일부로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있는 **유럽사법보좌관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법보좌관은 사법의 측면에서는 그 해당업무의 특수성, 독자성과 독립성에서 그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겠지만,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유럽차원의 법적 영역의 창설이라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Grünbuch

E) 사법의 평가 - 사법의 기능 장애의 해결

법원의 실무는 만성적인 업무과부하 및 소송의 지나친 지연과 현저한 구체적 타당성의 결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상실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조약(EMRK) 제6조는 누구든지 독립적인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도 “적절한 기간 내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인권의 침해이며 이는 법률상 보상책임으로 귀결된다. 현재 유럽 44개국이 이러한 사법의 기능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상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CEPEJ의 유럽사법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 2008년판, 67면 이하). 유럽재판소도 소송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이 확인되면 회원국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사법보좌관의 도입이 기능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적절한 소송기간의 보장을 통해서 보상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사법보좌관의 도입은 법관이나 검사들에게 자신들의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과 검사들의 핵심 업무는 원래의 재판업무나 효과적인 형사소추 업무에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법절차보장청구권의 보장과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있다. 사법보좌관의 도입을 통한 효과는 특히 강제집행분야에서 반복적인 업무의 폭주, 이를테면 국내 혹은 유럽의 지급 명령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기타의 반복적인 업무의 폭주, 또는 등기사건(상업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사법보좌관은 예를 들어 독촉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민사적 분쟁을 처리하여 법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포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사법보좌관은 사법부내의 혁신적인 변화를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매우 적절한 자원임이 실증되었다. 그 외에도 소송의 지연시 보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Grünbuch

우려가 있는데 사법보좌관의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6년 9월 16일 시작된 장관위원회인 **유럽위원회**의 권고, 즉 **Recommendation Nr. R(86) 12**(법원에 접수된 사건부담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제시되고 있다. 위 권고는 법원에 계속된 사건들의 지속적인 증가, 소송의 지나친 지연의 위험, 재판업무가 아닌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판사의 업무과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적인 자격을 구비한 법원공무원에게 법관의 업무를 이양하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 모델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안의 아이디어는 유럽사법보좌관의 이상과도 결부되어 있는데, 유럽사법보좌관은 유럽의 자유, 안전 및 권리 보장의 영역에서 **상당한 자질**을 갖춘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유럽사법보좌관**의 도입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고 합목적적인 사법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에* *게 많은 권한을 부여할수록 사법의 기능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F) 사법부의 효율성 - 시너지효과

결론적으로 유럽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유럽사법보좌관의 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도입과 결부된 상당한 **시너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유럽사법보좌관제도의 모델이 되는 독일의 사법보좌관의 역사는 **사법개혁**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독일의 사법보좌관의 역사는 사법에 대한 평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부족한 예산의 상황에서 법정책적으로 사법보좌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법보좌관을 도입함으로써 판사를 채용할 때와 동일한 비용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비용상으로도 저렴하고 보다 더 광범한 효과를 가져왔다.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은 (역자 주 : 1906년 프랑크푸르트시장인 아디케스(Adikes)가 말한, 독일사법보좌관제도의 시발이 되었던 유명한 경구인) “법관의 엄청난 시간 낭

Grünbuch

비(unerhörten Vergeudung von Richterzeit)"의 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원래의 재판업무가 아닌 법률이 후견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나 재판에 부수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의 업무영역에서이다. 대표적으로 비송사건과 강제집행의 영역이 그러하다. 사법이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과 형사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판사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업무는 자격을 갖춘 법원공무원, 이를 테면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보좌관에게 고유의 법관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실제 법관을 추가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절약의 효과로서 시너지효과가 성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부담이 없는 판사는 원래의 판사의 업무에 집중하고 특별히 업무부담이 많은 영역에 투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판사의 고용을 피할 수 있는 예산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법보좌관에게 업무를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장애 및 업무분담 과정상의 장애에 관한 법원의 책임을 야기하는 위임유보와 번거로운 중첩적 관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럽사법보좌관의 도입은) 높은 수준의 절차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Grünbuch

Ⅶ. 결론

E.U.R.(European Union of Rechtspfleger, 유럽사법보좌관연맹)은 EU의 회원국가들의 법무부장관들에 대하여 「법원의 업무부담의 처리와 경감에 대한 특정한 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에 대한 유럽각료위원회의 권고」 R (86)12호 [1986년 9월 16일에 각료위원회에 의해 유럽평의회(Europarat)의 규약(Statut) 제15b조에 따라 3999 회기에 통과]와 CEPEJ의 보고서(『유럽사법시스템에 관한 보고서-2008년판』)를 근거로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을 사법부의 준고위직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본 그린페이퍼에 따른 공직모델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는 효율적인 사법 및 국민에 가까운 사법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 업무가 사법부의 관할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모델은 다른 기관(가령 공증업무기관)에서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R.(유럽사법보좌관연맹)은 1999년부터 볼로냐에서 개최된 유럽교육부장관회의의 결과와 그 취지를 같이하는 그린페이퍼의 제안에 따라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보완하고 통일화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 통하여 통일적인 공직모델인 유럽사법보좌관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